3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O 발의일자 : 2021년 11월 30일

○ 발 의 자 : <u>윤기배</u>·김재우·김지만·윤영애·이시복·장상수·전경원·

황순자 의원

O 회부일자 : 2021년 12월 9일

○ 상정일자 :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년 12월 17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윤기배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O 근거 법률의 조항을 변경(안 제1조)
- 상해 보상에 해당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범위를 규정 (안 제2조)
- 상금 지급에 대한 인정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 O 장애와 상해 기준의 근거 법령 정비(안 제5조)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한 별지 서석을 생년월일로 개정 (별지 제1호, 제2호)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전문위원 신록휴)

## O 이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1.1.13.)을 앞두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의원의 직무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임.

#### ○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안 제명에서는 띄어쓰기를 통해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현행)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개정)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는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음.

- (법) 지방지치법 제 34조 ▶ 지방자치법 제42조
-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무"의 정의에서 의원이 지방의회 권한에 속하는 공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활동임을 규정하였으며,
- ▶ 안 제3조에서는 보상이 되는 의원의 "직무"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여, 공무원의 재해 인정범위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음.
-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장해등급"을 따른다고 규정하였음. 이는 전문적 이고 체계적인 공무원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따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 것임.
- ▶ 현행 별지 1, 별지 2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을 생년월일로 각각 대체하였으며,
- ▶ **안 부칙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22년 1월

13일로 시행일을 조정하였음.

▶ 그 밖의 안 제1조~제7조, 안 제9조~제15조 일부 조문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조례 전반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음.

##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원의 안정된 직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참고 1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2]

####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 1. 공무상 부상

- 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 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 한 부상
-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 2. 공무상 질병

-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방사선 자외선 에스선 유해광선 국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 써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

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 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 · 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라.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 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 하여 발생한 질병

- 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의 질병
  -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 3.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 、질병
  -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 4. 질의 및 답변요지

- O 없 음
- 5. 토론요지
  - O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O 없 음
- 7. 심사결과
  - O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O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O 없 음